

# 유비쿼터스항만IT연구소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본 연구소는 동명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 유비쿼터스항만IT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 연구소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IT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교수의 연구 분위기 조성, 신기술 개발, 국가 및 지역의 항만물류와 IT 산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사업)**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유비쿼터스 및 IT 응용 연구개발
2. 유비쿼터스 컴퓨팅 체계 및 기반기술 개발
3. 자동화, U-Port 구축, 재난예방 등 유관 기술 연구개발
4. IT 분야의 고급 인력양성
5. 기타 연구소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**제4조(소재지)** 연구소는 동명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캠퍼스 내에 둔다.

## 제2장 조직 및 임원

**제5조(연구부)**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연구팀을 둔다.

1. 유비쿼터스 응용기술 연구팀
2. 유비쿼터스 시스템 연구팀
3. 가상화 기술 연구팀

**제6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**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소장 1인
2. 감사 1인
3. 연구위원 5인

**제7조(소장)**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8조(감사)**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9조(연구위원)** 연구위원은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0조(연구원)** 연구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및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.

**제11조(자문위원)**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국내외의 저명한 학계 및 산업계 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#### 제12조(구성 및 회의)

- ① 연구소에 소장, 연구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.

**제13조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
3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
4. 연구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### 제4장 재 정

#### 제14조(재정)

- ① 연구소의 세입은 제3조의 사업에 의한 수익금, 산학협력단 연구보조금, 각종 연구비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② 연구소의 세출은 운영비, 연구용 기자재구입 및 연구비 등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#### 제15조(예산 및 결산)

- ①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와 같다.

## 제5장 기 타

### 제16조(해산)

- ①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.

**제17조(운영세칙)**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